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0 2018. 11. 29.(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05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11월 23일

-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O 자문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개편하고 위원 수를 조정함

나. 주요내용

- O 자문단 위원 수 조정 : 100명 이내 → 200명 이내(안 제3조제1항)
- 자문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정(안 제6조제1항)
 - 분과위원회 세분화 (2분과 → 4분과)
 - 복지・여성분과위원회 → '복지', '여성・청소년'
 - 바이오·환경분과위원회 → '바이오', '환경·산림'
 -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2분과)

- ∘ 문화·관광분과위원회 → '문화·관광·체육'
- ∘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 → '균형발전'

3. 검토보고 요지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2011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도정 정책자문단의 자문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행정수요에 부합하 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개편하고 위원 수를 조정하려 는 것임.

※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개요

■ 설치 배경

급변하는 중앙 및 지방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의 주요정책 및 현 안해결 방안 등에 관해 민간 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기능

-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 2. 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 3. 새로운 정책, 행정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 ·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현황

: 7개 분과 100명(4기, '17.8.17. ~ '19.8.16.) / 임기 : 2년-연임가능

구분	계	공공 혁신	복지· 여성	문화 관광	경제	바이오· 환 경	농 어업	지역균형 발전
위원수	100	12	18	12	20	12	12	14
여성위원	31	2	12	4	3	4	2	4

■ 운영 방식

- 회의 개최 시기 : 전체회의(반기별), 분과위원회(분기별)

/ 상황에 따라 탄력적 개최조정

- 간사 : 자문단 총괄간사(정책기획관), 분과별 간사(주무국 주무과장 선임)

- 경비 :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주요 도정현안 등 자문수당(건당 20만원 내)

나. 주요내용 검토

- O 안 제3조에서는 도정 정책자문단 위원수를 기존 '1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확대함.
 - 도정 정책자문단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 분과위원회의 세분화(안 제6조)에 따른 필요 위원을 충족하고, 정책자 문단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도 정책의 입안·추진 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과.
 - 지방자치의 활성화 추세에 맞춰 도정에의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정책자문단의 자문활동 실적 건수가 매년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문단 위원의 최대인원을 200명까지로 확대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도정 정책자문단 활용실적

	자문활동(건)	강의활동	
2016	52건 (자문단 회의 23건, 기타 자문회의 29건)	10개 과정	
2017	36건 (자문단 회의 25건, 기타 자문회의 11건)	22개 과정	
2018	23건 자문단 회의 18건, 기타 자문회의 5건)	22개 과정	

- 안 제6조에서는 자문단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일부 분과위원회의 담당 부문을 추가하고, 기존 7개에서 9개 분과로 세분화함.
 - 분과 세분화의 내용을 보면, '복지·여성분과'를 '복지분과'와 '여성 ·청소년분과'로 이원화하고, '바이오·환경분과'를 '바이오분과'와 '환경·산림분과'로 이원화하였으며, '문화·관광분과'에 '체육'을 포함시켰음.
 - 이는 여성, 청소년 및 환경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바, 도 정책 입안·수립에 있어 자문의 필요성 증대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전 문적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도정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변경 내용

현 행 (7개 분과)	개 정 안 (9개 분과)
1. 공공혁신분과위원회	공공혁신분과위원회
2. 복지ㆍ여성분과위원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3.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문화·관광· <u>체육</u> 분과위원회
4. 경제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5. 바이오·환경분과위원회	바이오분과위원회 환경·산림분과위원회
6. 농ㆍ어업분과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회
7.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	균형발전분과위원회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도정 정책자문단의 위원수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세분화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유인한 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법적으로도 문제없음.
- O 다만, 그동안의 정책자문단 활용실적을 감안할 때, 위원수 확대에 따른 효율적 활용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O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0

제출연월일 : 2018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자문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개편하고 위원 수를 조정함

2. 주요내용

- 자문단 위원 수 조정 : 100명 이내 → 200명 이내(안 제3조제1항)
- 자문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정(안 제6조제1항)
 - 분과위원회 세분화 (2분과 → 4분과)
 - 복지·여성분과위원회 → '복지', '여성·청소년'
 - 바이오·환경분과위원회 → '바이오', '환경·산림'
 -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2분과)
 - 。 문화·관광분과위원회 → '문화·관광·체육'
 -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 → '균형발전'
- 3. **의안전문** : 붙 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 6. 비용추계서 : 붙 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협의"를 "자문·협의 요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포함란 100명"을 "포함한 200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 2. 공공혁신분과위원회
- 3. 복지분과위원회
- 4. 경제분과위원회
- 5. 농·어업분과위원회
- 6.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
- 7. 균형발전분과위원회
- 8. 바이오분과위원회
- 9. 환경·산림분과위원회

제9조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도정정책자문단(이하	제2조(기능)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의 <u>자문·협의</u> 에 따른다.	<u>자문·협의 요청</u>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단은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u>포함란 100명</u> 이내의 위원으로	<u> 포함한 200명</u>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	
다.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①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공공혁신분과위원회	1. <u>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u>
2. <u>복지·여성분과위원회</u>	2. <u>공공혁신분과위원회</u>
3. <u>문화·관광분과위원회</u>	3. <u>복지분과위원회</u>
4. 경제분과위원회	4. 경제분과위원회
5. <u>바이오·환경분과위원회</u>	5. <u>농·어업분과위원회</u>
6. <u>농·어업분과위원회</u>	6.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7.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	7. 균형발전분과위원회
8. (신 설)	8. 바이오분과위원회
9. (신 설)	9. <u>환경·산림분과위원회</u>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① (생 략)	제9조(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	② 제8조제1항
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화·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주요 정책의 입안·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성을 더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2. 비용 발생 요인

○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비용 등

3. 관련조문

- 제9조(수당)
 -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 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개최비용 등

나. 추계의 전제 : 200명, 워크숍(연1회)·포럼(연1회)·현장방문(연2회) 개최

다. 추 계 결 과 : '19년부터 향후 5년간 총 400,000천원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처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세 출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도정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비용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연간 소요비용 : 80,000천원 (운영수당 45,000천원, 워크숍비용 35,000천원)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재영